

지방재정분야 질의 · 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정 광 랑

1. 기초자치단체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Q 질의내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라 함)」 제2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근거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농어촌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도 시·군·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고등학교 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중하게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법제처 의견이 법제처 홈페이지(법령해석·자치법규 의견제시-의견제시 사례-의견 11-0268)에 게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자치단체가 항만공사와 예산지원 협약체결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기초자치단체가 국가관리항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재정지원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항만공사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고 전제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 지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항만법」 제67조제4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재정지원을 위해 동 업무를 대행하는 항만공사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가관리항은 「항만법」 제3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항(港)이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동법 제41조 내지 제47조 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초자치단체의 독립대학발전재단 재정지원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독립대학(道立大學)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독립대학발전재단)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독립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독립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법령해석(11-0581, '11.12.8)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독립대학(道立大學)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재정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독립대학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도(道)의 사무로서 독립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재원의 지원·보조는 기본적으로 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질의 회신

Q 질의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시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당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

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가입이 인정되는 현행 법률 체계하에서 정당 가입을 이유만으로 예산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배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예산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의 여론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위법·부당한 조례 제정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5. “구”에 재배정된 예산을 “동”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현재 시에서 구로 본예산을 재배정해 주었습니다(2건: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특별회계 민간자본보조).
- 구에서는 재배정 받은 예산의 성격상 동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동으로 다시 재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 이때, 재배정은 안된다고 하니, 일상경비로 교부는 안될듯 하여 각 동에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교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A 회신내용

- 문의하신 사항은 재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부행정기구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배정은 예산의 집행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위임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공공시설 손실부담 및

계약보증·입찰보증 등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에 한하여만 인정되므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비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에는 재위임의 근거가 없고, 일시적인 보관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수입대체경비 운영방법

Q 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16조에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 예산편성하여 세입조치하지 않고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회신내용

- 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지출할 수 있다고 함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예외로서
- 본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대체경비는 자치단체장이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수입한 수입대체경비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금고은행에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계정을 설치하여 예탁하되,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세입예산액에 달할 때 까지 예탁금을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7. 투융자심사 대상여부 확인

Q 질의내용

■ 경기도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임차가구에 대한 에너지 개보수사업을 금년부터 3개년간 추진 계획 중이며, 해당사업은 주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창호·단열재 교체, 도배 등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개보수를 위해 호당 5백만원 지원/총사업비 60억, 전액 도비)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2012)에 따르면 일반투자사업에 부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사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에너지 개보수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 201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매뉴얼 7쪽

- 일반투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형질 변경, 부동산의 구조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A 회신내용

○ 주택개보수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여부

- 지방재정법령, 투융자심사규칙 및 동 심사매뉴얼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개보수 사업(노후 시설물의 교체, 도색, 방수공사 등)은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부동산의 구조변경(예 : 구조변경을 포함한 주택 리모델링 작업)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시설물 교체 및 성능 개선 작업에 한정된다면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8. 지방공사의 자본금 출자시 투융자 대상 문의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자본금이 부족하여 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지분은 공사 51%, 민간 49%)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총 소요 사업 예상 금액은 7,200억원으로 중앙 투융자 심사 대상인지, 아니면 제외 대상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A 회신내용

- 지자체 출자금 일부가 포함된 지방공사의 도시개발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방재정법령, 투융자심사규칙 및 동 심사매뉴얼에 따르면,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해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되는 지방비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주체(자체, 시도, 중앙)의 경우 민간출자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9. 지방재정분야 위원회 통합 관련

Q 질의내용

- 우리구에서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중 법령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재정분야 심의를 수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 등)에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용역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 연1회만 소집되는 “성과금심사”, “용역사업심의”, “재정공시심의” 를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 자체 조례(규칙,규정)만 정비하여 별도위원회를 두지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가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인지” 답변 부

탁드립니다.

- 타구에 이런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부득이 행안부에 질의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상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위원의 자격, 업무성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법과 동법시행령의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10,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 후 대출 금리 · 금액 등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 법제처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이 유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해당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정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한 보증채무의 동일성을 침해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증채무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어 원래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게 되는 정도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출금리 인상이나 대출금액 증가 등은 주채무의 확대를 가져오는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증가된 부분만큼의 신규 보증행위와 같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반면,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의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주채무의 축소와 보증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채권자가 본래 받아야 할 급부와 동일한 급부를 받게 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내용으로 주채무의 범위가 축소되면 보증채무의 범위도 축소된 주채무의 범위만큼 당연히 축소된다고 볼 것이고(「민법」 제430조 유추해석), 이는 당초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금액 축소 등 주채무의 축소를 가져오는 행위가 있어도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일 뿐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행정내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미 지방의회가 의결로 일정한 금액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다면 그 범위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수권을 한 것으로 이 경우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추가 의결과 같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무보증 신청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승인한 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보다 낮거나 적게 변경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인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1.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에 이자 포함 여부

Q 질의내용

- 채무부담 상환액 산정시 순공사비뿐만 아니라 상환이자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A 회신내용

○ 질의하신 내용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환 시 특별한 계약이나 협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상환이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채무부담행위 사업비 일정기간 분할상환 가능 여부

Q 질의내용

채무부담행위 사업비에 대하여 일정기간(2~5년) 분할상환이 가능한지?

- 지방어항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정도 예상됩니다.
-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현재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지방어항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로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5년이상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산낭비 및 태풍피해손실방지를 위해 채무부담을 통한 집중투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집중투자가 가능할 경우 공사기간은 1년정도 예상되며 채무부담에 따른 상환은 5년 정도 예상됩니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의 경우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지출하

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회와 같이 공사기간은 1년으로 완료되고 상환이 장기일 경우에도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올해 100억원(예산확보액 10억원 + 채무부담행위액 90억원)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향후 3~5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입니다.

A 회신내용

- 「채무부담행위 분할상환」에 대해서는
 -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
록 하고 있어 공사 준공이후의 분할상환에 대한 제약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법 제3항의 의미는 자치단체가 예산지출을 하면서 계속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는 할 수 없으나 채무부담행위는 2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3.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의 세출 예산편성

Q 질의내용

■ 채무부담행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차기 추정 시 첨부서류로 계속 제출하여야 하는지, 채무부
담행위 상환액의 예산편성 과목은

A 회신내용

- 채무부담행위 내용이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채무부담행위 조서
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 채무부담행위 예산의 편성과목은 채무부담행위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14. 사업예산제도와 기존 품목예산제도와 차이

Q 질의내용

- 사업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예산제도와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A 회신내용

- 품목예산제도는 사업 본래의 성과달성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이 어려운 예산편성 제도임
-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담당조직의 자율과 책임 하에서 개별사업의 성과관리를 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중시함
(투입·재원중심→산출중심, 통제중심→성과중심, 품목중심→사업중심)

15.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비교

Q 질의내용

-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A 회신내용

① 구조적 측면

구 분	품목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	비 고
기본체계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정책 및 사업, 중장기 및 단년도 예산과 연계
기능분류	5장 16관	13분야 51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출 예산을 일치 UN COFOG 기준
사업체계	세항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이 목별로 구분되어 산재	정책-단위-세부사업 단위로 묶여 자치단체 자율 설정	정책사업이 자율과 책임의 기본단위로서 기능

예산품목	· 8그룹 38목 109세목 · 목 · 세목별 예산편성	· 8그룹 38편성목130통계목 · 편성목별 예산편성	· 통계및회계처리등을 위해 통계 목 사용
예산원가	인건비 · 기본사업비 및 주요사업 비가 사업단위로 연계되지 않고 구분 관리	주요사업비는 직접비로, 인력운영 비 및 기본경비는 간접비로 단위 사업 수준에서 연계관리	간접비의 범위 및 예산원가 수준 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산서체계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 편제	사업중심으로 편제	정책방향성제시등포함

② 운영적 측면

구 분	개 선 방 향
재정계획	· Top-Down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한도액관리 도입
예산관리	·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성과예산서 작성 · 예산서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부서가 자율권 보장을 위한 변경사용절차 도입
예산집행	· 복식부기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통계목과 회계계정과목을 연계
결산관리	·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사업별 원가보고서 작성 · 예/실대비를 위한 예산결산과 발생주의 ·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결산
모니터링	· 사업별 Life-cycle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카드를 통해 재정운영현황 모니터링

16. 지방의회 의정회의 법적 성격 등

- 대법원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 취지 및 이에 위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재의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3]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도 · 감독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지방재정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위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외 1인)

A 회신내용

1. 조례안의 재의결과 그 내용

재의결되어 확정된 조례에 따르면, 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하며(제2조 제1항),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② 의정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정 홍보,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복지증진 방안의 연구, ④ 그 밖에 이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원고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한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4조 제1항), 또 원고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2. 7. 22.에는 조례 제2조 제1항 중 현임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2002. 10. 4.에는 조례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 미리 원고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례 제3조 제2항을 재의결한 것은 위 법률의 규

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정 취지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위반하여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재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의결이 (구)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의정회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원고가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 제3조를 피고가 재의결한 것은 (구)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고,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정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발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일응 지방자치단체 인 서초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의정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의정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앞으로 의정회가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과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점,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의 대표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원고가 의정회의 설립이나 의정회가 영위하려는 사업에 반대하여 그 설립이나 사업수행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의정회가 영위하려는 위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 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의정회는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도 기부·보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의정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고, 제4호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의정회의 사업이 서초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서초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의정회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나 그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7.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조례로서 소송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Q 질의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A 회신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원방법이나 지원내용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이 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고소)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보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형사소송이 계속된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러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사무라 할 것으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위조항에 근거한 이상,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이 감액되는 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제2항,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에 대한 형사

사건의 비용 지원제도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형사사건 비용지원 대상인 범죄의 종류는 제한되어야 하고, 수사단계인 경우를 지나 형사소송 단계에서의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기타 수사가 개시된 경우(고소 또는 고발인지,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것인지),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액수 및 범위,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지원 방법이나 지원대상 등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8.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대법원

(판시사항)

- [1]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2]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 [3]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가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 보호제도와 모순·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4]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보호법과 모순·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생활보호제도를 두면서 그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조례가 생활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A 회신내용

[1] 지방의회가 2년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여 그들에게 생활보호법 소정의 생계비 수준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안을 의결한 경우, 당해 조례안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위 [1]항의 조례안의 내용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과 그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방법, 보호의 내용을 생활보호법의 그것과는 다르게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점이 있고, 당해 조례안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며,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당

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권에 의하여 확보한 재화는 구성원인 주민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의 운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활곤궁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탓할 수는 없는바, 생활보호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별도의 생활보호제도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안이 생계비 지급대상이 되는 자활보호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보호대상자의 범위 및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액수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생활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당해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조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액을 당해 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하도록 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당해 조례안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 제3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9. 보조금 반환 명령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를수 있는지 여부

Q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민간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인해 반환을 명하고, 불복 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은 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20. 보조사업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 보조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이 보조금을 신청하여 당초 사업경비는 국비, 지방(자치구)비, 학교가 각각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으나, 학교가 당초 분담하기로 약정되었던 금액을 이행 하지 못하고 자치구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왔다면, 자치구가 학교 자부담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A 회신내용

-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중앙부처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결정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 동 법령 등에 따라 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조치 등은 관련규정에 의할 사항이므로,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의 변경 등이 당초 교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주무 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불이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조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귀 자치단체의 보조금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학교의 자부담 조건이 보조사업자 선정 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당초 학교와의 사업을 협약한 취지 및 당해 학교의 실제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임대료 지원 가능 여부

Q 질의내용

■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비영리 단체에 사무운영비로 지급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월세 계약은 불가하고 전세계약으로 임대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안된다는 규정도 찾을 수 없고 전세만 가능하다는 규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A 회신내용

-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의 성격으로서, 구체적인 경비의 내역은 각 지자체별 보조금 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시의 교부 조건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계약의 종류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 질의하신 임대료는 운영비에 해당되므로 먼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체의 조직 및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등을 포함하는 것이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제외동포 지원 경비 지출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재외동포지원 사업(러시아 고려인 마을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관

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교류협력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한 외국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류협력과 관련된 경비 지출은 허용되나, 이러한 경비 외에 일반적인 재외동포 지원사업 등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임대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농업정책 시설보조금으로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당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10년으로 정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임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제10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교류협력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한 외국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류협력과 관련된 경비 지출은 허용되나, 이러한 경비 외에 일반적인 재외동포 지원사업 등은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4.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임대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농업정책 시설보조금으로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당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10년으로 정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임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민간자본보조금 교부 시에는 교부조건으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조금 교부시의 교부조건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5.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의 임대 가능여부

Q 질의내용

■ 자치단체가 농업정책 시설보조금으로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당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10년으로 정한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임대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A 회신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민간자본보조금 교부 시에는 교부조건으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및 보조금 교부시의 교부조건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